

재수강 제도

1. 재수강 제도

-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79점 이하인 경우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는 제도
-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일 경우에는 동일교과목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, 실격교과목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함

2. 재수강 신청기간

- 실격교과목 재수강 신청 :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강정정 기간까지 수강신청 가능
- 취득교과목 재수강 신청 : 미수강자 수강신청기간[2025.02.28.(금)] 및 수강정정 기간[2025.03.04.(화)~03.10.(월)]에 수강신청 가능

3. 유의사항

-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되며, 최대 성적은 A(94점)이하로 함
- 기존에 이수했던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재수강 과목의 성적이 최종 학정처리 된 이후 자동 소멸되며, 재수강 한 학기의 성적으로 취득 처리됨
예) 2024학년도 1학기 이수했던 교과목의 성적이 75점이며, 2024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'65점' 또는 '실격' 일 경우, 2024학년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에 2024학년도 1학기에 이수했던 교과목은 자동 '재수강포기' 처리되며, 2024학년도 2학기에 '65점' 또는 '실격'으로 성적증명서에 표기 됨
- 재수강을 하는 경우 취득학점 계산에 유의하여야 함
예) 재수강 신청 시 학점 계산 방법
 - 재수강 3학점 신청(실격(F) 교과목 재수강 시)
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취득 시 총 취득학점은 121학점
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실격(F)시 총 취득학점은 118학점
 - 재수강 3학점 신청(60점 이상 이수 교과목 재수강 시)
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취득 시 총 취득학점은 118학점
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실격(F)시 총 취득학점은 115학점

※ 2020학년도부터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양선택 과목을 '균형교양'과 '선택교양'으로 분류함.
2019학년도 이전에 균형교양으로 취득한 교과목이 "2020학년도부터 균형교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재수강 시 균형교양 학점에서 제외"됨